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8009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8.01.29]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5.12.]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www.soplus.co.kr
efs1899@naver.com

소플러스

정보공개서

(주)엔조이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 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55-092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983-923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영업부, 1855-0925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4.25	2017.05.25	김종연	1855-0925	031-983-9231
	법인등록번호	124411-0192724	사업자등록번호	303-81-7923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김종연/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연	1855-0925	031-983-923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이사	김병훈/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연	1855-0925	031-983-923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이사	김보름/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연	1855-0925	031-983-923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감사	장은진/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연	1855-0925	031-983-923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소플러스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소플러스	
상호	소플러스 OO 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1-0354994 호
광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 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년	7,161,579	2,494,189	4,667,390	12,565,681	3,665,529	2,766,261
2023 년	14,719,173	6,830,041	7,889,132	14,050,218	4,451,156	3,321,742

2024 년	17,392,448	7,129,733	10,262,715	14,067,534	4,234,375	3,079,561
--------	------------	-----------	------------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3]**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종연	대표이사	2017.04~현재	(주)엔조이푸드시스템 대표이사	경영총괄
	김병훈	이사	2023.05~현재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이사	가맹점관리
	김보름	이사	2023.05~현재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이사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장은진	감사	2017.04~현재	(주)엔조이푸드시스템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 년 12 월 31 일	3	1	26

*직원수에는 소플러스 직영점의 인원을 포함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엔조이푸드시스템	가맹사업 경영	2019.08~2024.12	일산생갈비(등록번호: 20200613)라는 한식사업 경영

*일산생갈비는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2024 년 12 월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소플러스	영업표지로 사용 (귀하에 제공하거나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등에 사용 가능)	2015.08.11 출원 2016.04.06 등록	출원번호 41-2015- 0038052	김종연	2026.04.05 (10 년)
			등록번호 41-035499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소플러스** 가맹사업 현황

1. **소플러스**를 시작한 날: 2017 년 04 월 25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 09. 15)

2. **소플러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김종연	2017.04~2019.0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 58 번길 105-1, 4 층 401 호(전호리유희프라자)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소플러스	김종연	2019.02~현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 로 212 번길 65, 101 호(장기동)

3. **소플러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소플러스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한식	소고기

4. 바로 전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소플러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2 년 12 월 31 일			2022 년 12 월 31 일			2022 년 12 월 31 일		
	전체	전체	전체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6	25	1	32	31	1	40	39	1
서울	2	2	-	2	2	-	3	3	-
부산									
대구									
인천	7	7	-	7	7	-	7	7	-
광주									
대전				1	1	-	1	1	-
울산									

세종									
경기	15	14	1	19	18	1	22	21	1
강원							1	1	
충북							1	1	
충남	2	2	--	2	2	-	3	3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		2	2	

5. 바로 전 3 년간 소플러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20	5	-	-	-	25
2023	25	6	-	-	-	31
2024	31	10	-	2	-	39

6. 소플러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소플러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2.12.31	23.12.31	24..12.31
가맹본부	(주)엔조이푸드시스템	일산생갈비	20200613	한식	1/1	1/1	해당없음

*일산생갈비는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2024 년 12 월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소플러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 년말 가맹점수	2024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m²당	상한	면적 3.3 m²당	하한	면적 3.3 m²당	
전체	39	2,624,065	20,690	6,493,606	49,328	832,621	5,297	35 곳산정
서울	3	해당없음						5 곳미만
부산								
대구								
인천	7	2,084,025	21,266	2,844,560	29,749	832,621	13,877	
광주								
대전	1	해당없음						5 곳미만
울산								
세종								
경기	21	2,895,723	22,543	6,493,606	49,328	734,786	10,497	
강원	1	해당없음						5 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 곳미만
충남	3	해당없음						5 곳미만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해당없음						5 곳미만

당사의 가맹점은 POS(Point of Sales)를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관계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세확정신고서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부가세제외)를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오픈 6 개월이 안된 일부 가맹점은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며,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엔조이푸드시스템](#)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소플러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소플러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4 년	39	1,252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소플러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해당 없음"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	-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당사에서 [직전년도](#)에 [소플러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348	 (비공개)	-	
광고	소계		3,348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일산위시티지점	(103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81, (식사동)	031-962-194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개인 → 부가서비스 → 가맹금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엔조이푸드시스템**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소플러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9,500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시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비용 소요	영업표지 사용대가
교육비	36,300	계약체결 시	교육시작 1 일 전에 계약해지	운영 노하우 등 영업할 수 있는 기술 이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행사비	2,200	계약체결 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보증금	20,000	계약체결 시	계약위반 및 채무불이행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9,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6,300
개점 행사비	2,200
보증금	2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75,000	5,750			
인테리어	협력업체(협력업체)	246,700	2,467	계약금(계약 시): 40% 중도금(공사중간일): 40% 잔금(오픈 3일 전): 20%	공사 전 계약취소	330㎡ 기준 (100평)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협력업체 외)	50,800			상품 미공급 시	
간판	협력업체(협력업체)	22,000			상품 미공급 시	

판촉물 등	가맹본부	-			개점 전, 판촉물 제작 전 계약취소	
별도공사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지정) 본사에서 공사업체 미지정시 자체조달	255,500				다트, 외부공사, 화장실공사, 철거, 가스공사, 전기증설, 소방시설, 정화조공사, 냉난방공사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에서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m² 기준으로 330 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후 3 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입점 가능한 점포의 설명 및 추천) → 최적의 입지 도출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소플러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당사는 가맹금의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POS 매출 (부가세포함) 대비 2%	매월 10 일	-	-	영업표지(브랜드) 사용대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 8. 1) 참조		반환되지 않음	광고집행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반환되지 않음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4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당사는 제 3 자 물류 형태의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품목(강제, 권장)을 가맹점에 직접 납품하거나 그 거래품목의 대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 회	문의: 총무부 (1855-0925)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	문의: 총무부 (1855-0925)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 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합니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갱신 가입비	11,000	갱신 계약시			계약갱신 시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시작 7 일 이전	교육시작 1 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시작 후 반환되지 않음	추가교육 필요 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소플러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엔조이푸드시스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해지·종료 시 당사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귀하는 그 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1일 200천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소플러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소플러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소플러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는 **소플러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기류(갈비살, 등심, 홍두깨, 육회, 흑돼지 등), 주류 및 음료 등으로 가맹점에 개별 공지하는 메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판매 제한되는 상품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및 만 19 세 미만 자 (미성년자)	당사 및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방법	비고
소갈비살 800g	72,000	월별로 또는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	2024 년 12 월 기준
소갈비살 400g	41,000		
꽃살 450g	84,000		
꽃살 300g	62,000		
육회 200g	28,000		
특급생갈비 800g	76,000		
특급생갈비 400g	44,000		
소갈비살 추가 150g	17,000		
갈비살 400g+갈비 400g+꽃살 300g	136,000		
갈비살 400g+갈비 400g	76,000		
갈비살 400g+꽃살 400g	94,000		

뼈삼겹 800g	71,000		
----------	--------	--	--

당사는 시장상황, 소비자 및 경쟁업체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소플러스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간격으로 설정. 다만,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소플러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소플러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4.7%	5.3%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당사는 가맹점/직영점 전용상품 구분이 없으며, 가맹본부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소플러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3 호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4 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5 호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7 조 제 1 항 제 6 호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1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1 호
○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2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4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5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6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3 조 제 5 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7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 30 조 제 1 항 제 8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1 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2 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3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 38 조 제 2 항 제 4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8 조 제 2 항 제 6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7 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8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38 조 제 2 항 제 9 호
---	-----------------------

5) 계약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수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연장·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당사의 서면 동의를 득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10 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비, 교육비 납입 후 교육수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및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영업부, 1855-09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가맹점운영권 상속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상속인 면담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상속 계약 체결(5 일 소요)	교육비 납입 후 교육수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대리인 면담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대리인,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계약 체결(5 일 소요)	교육비 납입 후 교육수료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수탁인 면담포함, 30 일 가량 소요)	교육비 납입 후 교육수료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수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계약 체결(5 일 소요)	
--	--	--	--	--

당사가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비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승인하면 대리인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가맹비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대리행사, 업무위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영업부, 1855-09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소플러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고기류(소고기 등)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부 (1855-092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소플러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주 6 일 이상, 월 26 일 이상	문의: 영업부 (1855-09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질병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7 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에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부 (1855-0925)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영업부 (1855-0925)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방문 → 품질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부 (1855-0925)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소플러스**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광고비의 50% /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통지 → 통지된 날로부터 7 일 이내 입금	가맹점사업자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불참 시 행사 시행 20 일 전까지 당사에 서면 통지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75%	광고비의 25% /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판촉행사	공동행사	50%	50%	당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행사 시행 → 행사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확정된 날로부터 7 일 이내 입금	
	개별행사	없음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별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 40 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u>금이천만원(₩20,000,000)</u> 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27 조 제 1 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제 28 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u>금일천만원(₩10,000,000)</u> 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35 조 제 2 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u>금일천만원(₩10,000,000)</u> 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38 조 제 4 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서 <u>금일천만원(₩10,000,000)</u> 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u>1 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u>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 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9 ~ D-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7 ~ D-3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3	
가맹금 예치 또는 지급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33 ~ D-32(2 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2 ~ D-30(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9 ~ D-28(2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0 ~ D-4(27 일)	
간판 및 사인물	- 간판 등의 제작 및 부착	D-15 ~ D-9(7 일)	
제반 인허가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카드인증	D-9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5 ~ D-6(30 일)	
주방설비 입고	- 주방설비, 집기 외 초도물품 입고	D-8 ~ D-4(5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부 (1855-0925)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특별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문의: 영업부 (1855-0925)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소플러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POS 사용, 입금방법 등	집단강의 실습교육	최초계약 시 (가맹계약체결 후 2 개월 이내)	필수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 시 (교육실시 10 일 전에 공지)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소플러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이론 일 8 시간 (2 주) 실습 일 12 시간 (2 주)	36,300	최초계약 시 이수 (지방에서 본점 등 교육을 위해 숙박을 요하는 경우 본사에서 숙식제공)
보수 교육	1 일 이상	3,300	필요 시 이수
기타 교육	1 회	실비 청구	점주 요청 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가맹점운영권의 제한사유 및 계약갱신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미사직영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50(미사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 년 4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151,09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별첨 [2]: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확인서

별첨 [3]: 바로 전 사업연도 재무상황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4]: 원부자재 목록

별첨 [5]: 주방기기등 목록

별첨 [1]: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가맹희망자 보관용)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당사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맹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 (주)엔조이푸드시스템으로부터 소플러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을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내용
◆ 소플러스 정보공개서 ◆ 소플러스 가맹계약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당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는 등 가맹점 창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기 위해 유출, 복사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이 정보공개서 등을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등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정보공개서 등 수령장소				
가맹본부 대표(담당)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등 수령인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 **(주)엔조이푸드시스템**으로부터 **소플러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을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내용
◆ 소플러스 정보공개서 ◆ 소플러스 가맹계약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목록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당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는 등 가맹점 창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기 위해 유출, 복사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 이 정보공개서 등을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등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정보공개서 등 수령장소		
가맹본부 대표(담당)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등 수령인	(인) 또는 (서명)	

별첨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원부자재 목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주방기기 등 목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